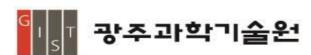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모듈 변경 사업
주관기관	광주과학기술원

2024. 10.

사업부서	연구관리팀	박인선	062-715-2032	pis0724@gist.ac.kr
가급구시	정보운영팀	박민성	062-715-2074	mspark@gist.ac.kr



목 차

I. 개
1.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
2. 사업목적 • • • • • • • • • • • • • • • • • • •
3. 사업목표······ 2
4. 사업범위 • • • • • • • • • • • • • • • • • 2
5. 사용현황····· 2
6.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Ⅱ. 현 황・・・・・・・・・・・・・・・・・ 3
1. 시스템구성도 및 보유현황·······
2. 전산장비 및 사용 소프트웨어 현황·····
3. 통합정보시스템 현황・・・・・・・・・・・・・・・・・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4. 추진방안 · · · · · · · · · · · · · · · · · · ·
Ⅳ. 제안요청 사항・・・・・・・・・・・・・・・・・・ (
1. 일반사항・・・・・・・・・・・・・・・・・ 🤉
2. 제안요청 필수사항・・・・・・・・・・・・・・・ 🤉
3. 제안요청 내용・・・・・・・・・・・・・・・ 10
V. 제안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25
1. 입찰방식 • • • • • • • • • • • • • • • • • • •
2. 제안서 평가방법・・・・・・・・・・・・・・ 25
3. 기술성 평가기준・・・・・・・・・・・・・・ 27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1
5. 제안 평가····· 32
6. 제안 보상····· 32

VII.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36 36 36 36 36 37 37
[별표1] 제안사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3 [별표2]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 평점표···· 4 [별표3] 제안사 계량평가 요약서 ···· 4	40
[붙임2] 제안 관련 서식····································	4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7 68
	69 70

I 개 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모듈 변경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안요청서 내 추진일정표 참조

다. 사업비 : 54,450,000원(VAT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마. 대금지급방법

1) 선금 : 100분의50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 47조 선급금지급)

2) 잔금 : 최종검수 완료시 지급

2. 사업배경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에 따라 연구 비목 및 세목이 변경됨으로써 연 계 전송의 오류 발생
- 나. ZEUS-RCMS간 연계 타입 구모듈에 대한 최신 모듈 적용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다. 부가세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연계 전송 기능 개선 필요
- 라. 연구비 집행(출장비, 회의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건에 대한 세부사항 연계전송 개선사항 반영 필요

3. 사업목표

- 가. uZeus-RCMS 연계 모듈 변경 및 기능 개선으로 업무 편리성 제고
- 나.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를 통한 업무효율성 극대화
- 다. RCMS와의 직접 연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증대
- 라. 조직 간의 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서비스 제공

4. 주요 사업범위

- 가. ZEUS-RCMS간 연계 모듈 변경
- 나. 부가세 연구과제 전송 관련 개선

5. 사용 현황

- 총 75개 과제, 6개 부처(11개 전문기관)

(2024년 9월 현재 기준)

부처명	전문기관	과제 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4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한국산업단지공단	1
	민군협력진흥원	6
해양수산부(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국방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5
10T	국방과학연구소	4
농림축산부(농림부)	농촌진흥청	1
소:	75	

6. 기대효과

- 가. RCMS 이체 전송 오류 건에 대한 수정작업의 중복 업무 해소
- 나. 자계좌이체 승인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 다. RCMS와의 직접 연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증대

Ⅱ 현 황

1. 시스템 구성도 및 보유 현황

- 가. 네트워크 및 관련 시스템 구성도
 - 내방하여 주관 기관 숭인 후 직접 열람.

2. 전산장비 및 사용 소프트웨어 현황

가. S/W 현황

구 분	내 역	도입년도	비 고
DB	Oracle 11g Enterprise Edition 50Users	2012	150 user

	암호화 프로그램(KSIGN)	2012	
	Web Mail	2015	
E-mail	대량메일시스템	2015	
E-IIIāli	2 11 2 1 1 5 1 11	2010	upgrade
	스팸스나이퍼	2003	
	Handy Offcie 3.0 Server	1996	
	Handy Offcie 3.0 Client	1990	
	Handy Client S/W	1996	
	Handy MCU S.W	1990	
	Handy Client Module	1997	
그룹웨어	Handy Client Module	1999	
<u>~ 4 H M - 1</u>	Handy Office Upgrade V3.5	1333	
	KMS4.0 전자결재연동		
	근무상황부	2004	
	검색엔진		
	BizFlow Groupware Upgrade	2006	
	대장관리프로그램	2000	
그룹웨어	Handy Groupware 8.3	2015	
SSO	Safeidentity Policy Server	2015	
WEB/WAS	Tmax WebtoB 2core	2015	
	Tmax Jeus 3core		
	SecuveTOS	2015	
보안	Zenius	2013	
	Anysign for PC		
포탈엔진	eXPortal	2015	
	Nexacro PLATFORM License(개발툴)		
	KM Rules + KM Studio(전자메뉴얼)		
개발관련Tool	REXPERT Enterprise 3.0(리포팅툴)	2015	
	Borland Together for Eclipse(Case툴)		
	eXERD(DB 모델링툴)		

3. 통합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시스템	업무내역	세부내역
통합정보시스템	일반행정	인사관리	- 인사관리/기간제 인사관리

	Г	Т	
			- 출장/교육/근태 관리/업적평가 관리 - 채용 정보 관리
		급여관리	- 급여 관리/연말정산관리/퇴직금 관리
		예산관리	- 예산 편성/변경 관리/실적 대비 관리
		재무관리	- 지급신청/결의서/결산/자금/법인카드 관리
		구매관리	- 구매 신청/접수/입찰/계약/검수/대금지급 - 직접구매 신청/검수/대금지급
		자산관리	- 자산관리/재물조사/자산변경관리
		발전기금	- 회원관리 / 약정관리 /납부관리
		시설관리	- 시설관리 / 예약관리/공공요금관리
		감사관리	- 규정위반사항관리 / 급여계좌변경이력
		국제협력	- 협약관리 / 외인현황
		기술경영아카데미	- 동문회관리 / 위원회관리
		의무관리	- 진료관리 / 종합검진관리
		대외협력관리	- 발전기금/국제협력/사회봉사
		학사관리	- 학적관리/수강관리/성적관리/졸업관리
	-1 (1 -11 -1	장학관리	- 장학생관리/납입금관리/학자금관리/조교관리
	학사행정	기숙사관리	- 거주자관리/고지정보관리/기숙사신청
		상담관리	- 상담신청/상담이력관리
		연구과제관리	- 과제신청/과제관리/연구노트/연구예실대비
		연구비관리	- 연구비카드/외부연계/입금/지급/연구비정산
	연구행정	연구성과관리	- 연구실적관리/특허관리/KRI관리/기술이전
		연구센터관리	- 연구센터정보/센터직원/현황
		위원회관리	- 위원회활동내역/위원회정보조회
	01 11 71 71	학부입시	- 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전형/등록/학적이관
		내국인입시	- 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전형/등록/학적이관
	입시행정	외국인입시	- 원서접수/서류전형/합격처리/학적이관
		해외교환학생	- 원서접수/서류전형/합격처리
		계정관리	- 사용자관리/접근이력관리
	공통업무	메뉴관리	- 프로그램정보/메뉴정보/메뉴별프로그램관리
		권한관리	- 권한관리/업무별관리/사용자별관리
	경영정보	학사행정	- 학생현황/논문현황/취업률현황/진료현황
		일반행정	- 교직원현황/재무상태표/발전기금현황
		연구행정	- 연도별연구계약고/연구통계현황
통계정보시스템	GIST	경영정보	- 인사,학생,재무회계,연구, 발전기금,구매,자산

		Г	
		My Service	- 학생,교직원현황,재무회계,연구,발전기금,
	Share	경쟁력분석	- 학생,교육여건,교육성과,교원업적
		부서통계	- 대학, 대학원, 행정
		Share Zone	- 대학, 대학원, 행정
		교육부통계	- 대학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 통계마감처리
		공통관리	- 운영관리, 게시판관리, 시스템관리, 내폴더
포탈시스템	Portal	Portal	- 포틀릿서비스/SSO연계/관리자서비스
전자결재시스템	전자결재	전자결재	- 업무메일/게시판/결재/문서함/주소록/연계
메일시스템	웹메일	웹메일	- 편지쓰기/메일함관리/주소록관리/연계
매뉴얼시스템	매뉴얼	매뉴얼	- 원규관리/예규관리/매뉴얼관리/관리자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가. RCMS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업무서비스 품질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축
- 나. 사용자 중심의 업무 개선 향상을 통한 업무 연속성 보장 및 통합 환경 증대다.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의 프레임워크 재사용으로 유지와 보수의 용이성 증대

2.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도



나. 업무분장표

구분	주요역할 및 기능	비고
사업추진	o 사업추진 총괄	연구처장

사업총괄	o 사업추진 관리	연구관리팀장
사업주관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제안요청서 작성 등 사업진행 ○ 사업 단계별 확인 및 산출물 검증 ○ 시스템 검수	연구관리팀장
실무지원	 ○ 업무별 기능 개선 사항 요구 ○ 부서별 업무관련 자료 제공 ○ 현업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 TF회의 및 사업 단계별 확인 ○ 시스템 테스트 및 검사 ○ 시스템 인수 	현업담당
용역수행	 ○ 실행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 산출물 작성 ○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용역사업수행자

3. 추진일정

가.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추진일정표

구분		N	N.			M+1 M			M	+2		
, 4	1	2	3	4	1	2	3	4	1	2	3	4
	설	계										
주요 계획					개발							
계왹								테스	스트			
											Open	
											안정	병화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고려사항

- 제안 업체는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구축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붙임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참조

4. 추진방안

가.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9호, 2024.2.28.) 준수

나.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다. 하도급 여부 : 하도급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 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 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IV

- 가. 제안서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 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 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나. 제안사는 계약기간 동안의 시스템구축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과 제안에 따라서 광주과학기술원(주관기관)의 협의·승인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라. 신규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운영 환경 구축 시 기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구축해야 하며, 한 시스템의 장애가 다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함.
- 마.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 도입 제품 및 기사용 중인 제품과의 유기적인 연계 구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여야 함.
- 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담당자 입회하에 내방하여 열람만 가능함.
- 사. 본 사업과 관련된 구축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 제출
- 아. 각종 지침 준수
 - 1)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 4)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2021. 3. 5., 타법개정)
- 5)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25)
- 6)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제2009-185호)
- 7)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 5. 8., 일부개정)
- 8)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0)
- 9)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 10)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 자. 개발 전 과정은 SW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및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함.

2. 제안요청 필수사항

- 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표준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를 정의하여 시스템 구축 및 안정성 확보
- 나. Active-X 제거, HTML5의 적용 등 웹 표준을 준수하며 모든 브라우저에 호환되어야 함
- 다. 보안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보안성 강화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제시해야 함
- 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필요
- 마. 시스템 확장성을 위해 표준을 최대한 준수하고, 납품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해야 함
- 바. 계약 전에 본 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원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원의 해석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 구축된 시스템(솔루션 및 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데이터 교환이나 시스템 연계가 가능해야 함

3.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기능요구사항(FUR)	FUR-000	7
성능요구사항(PER)	PER-0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R-000	3
데이터요구사항(DAR)	DAR-000	4
테스트요구사항(TER)	TER-000	3
보안요구사항(SER)	SER-000	4

요청사항 구분	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품질요구사항(QAR)	QAR-000	1
시스템 요구사항(SYR)	SYR-000	2
제약사항(COR)	COR-000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0	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0	4
합계		37

4.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FU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테이블 생성 및 교체						
요구	정의 연계 데이터 테이블 생성 및 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을 제거하고, RCMS 연계 블을 기존 ZEUS 시스템의			

요구사형	}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정의 신규 연계 데이터 테이블에 이전 자료 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 상황에 따라 데이터 이	관 작업이 있을 경우, 데여	이터 이관 요청	

요구사항	·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모듈 변경				
요구	정의	외 모듈 변경에 따른 시스템 연계작업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듈변경에 따른 ZEU	S-RCMS 시스템 간 연계적	낚업 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모듈 변경에 따른 이체 실행 기능 추가							
요구	정의 이체 실행 기능 추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_ ,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그	1유	번호	FUR	-00	5	
요구사항	- 명칭	부가세 연구과	제 전송	· 개선					
	정의	부가세 연구과	제 전송	テ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 용	금액이 전송	변경 전 전 전 송	는 부분에 대한			백	야 !경 전 송	후RCMSex)사용금액11만원-공급가액:10만원

요구사형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그	고유	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RCMS 연계전송 건 계속비(이월금) 선 집행										
	정의	연계전송 건 계	속비	(이월금) 성	선 집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ZEUS에서 F 이 되도록 3 ZEUS 회의비 30,000원	요청	전 RCMS (이체왼 금액) 본예산: 30,000원 계속비:	S I료	대학	한 RCMS 계 ZEUS 회의비 30,000원	속비 현 변경 전 송		S !d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			요구사항	고	유번호	FUR-	-007	
요구사형	항 명칭 집행내역 세부사항 연계 전송 기능					생성		
	정의	집행내역 세부	사항 연계	전송 기능	· 생	성		
		세입력 기능 전문가활용비	는가되어, 추가 요	이지바로	. 상	세입력 기능	'과 유	·사하게 RCMS 상 출장비, 회의비, 후
요구 사항						회의비		회의목적, 회의일자, 회의시간 회의장소, 회의상세장소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회의비 출장비 전문가활용비	송 ' '	및 세목, 내역 전송	*	출장비	천 송	출장목적, 해외구분, 도착지 및 출발지(도, 구), 출장기간, 도착지 장소, 출발지 장소, 기관명, 출장자, 지급액
						전문가활용터	1	전문기술활용목 적, 활용일자, 활용장소, 활용 상세장소

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정의	본 사업 개발 어플리케이	션이 원활한 처리를 위한	성능요건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 용	 기타 타당한 사유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 응답대기 메시지 기존 통합정보시스템 	의 적용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	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구사학	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	정의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된 - 통계 기능 등 20초 이상 수 있다는 메시지 제시(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7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여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팝업 등) 법은 작업 진행상황(Status B	에게 제시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	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용자 정보는 인사 기록 - 시스템의 연계는 주관기	능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 준정보와 연동이 가능해야 한 관 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의 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	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요구사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정의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다양한 브라우 서도 서비스가 되어야 한 - 주관기관 정보시스템	편리하도록 웹 기반으로 ⁻ -저 환경(IE, 크롬, 파이어폭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및 적용을 하여야 한다.	-스, 사파리, 모질라 등)에 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학	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요구	정의	사용자 편의 기능구현				
사항	을 표시하며, 필수 입력					
상세 생부 항목 미 입력 시 등록 및 수정이 되지 않도록 함.						
설명	내용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공해야 함.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	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	정의	신규 또는 변경 테이블어	대한 설계 방안 제시	
사항 상세	세부	- 데이터베이스의 형상변기	경이 요구될 경우 테이블의	추가 및 변경분은 기존
설명	내용	테이블과의 통합성을 유	-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학	항 명칭	초기자료 구축			
	정의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교육, 시범운영 등에 필수적인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		- 초기자료 구축 시, 기존 테이블과의 연관성을 고려 데이터 정합성 유지			
사항	사항 세부 - 구축 원칙				
상세	상세 ·자료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설명	설명 내용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 확인				
		·시스템 등록된 자료 내용	- 검증		

요구사	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코드체계				
요구	정의	신규 기준 데이터 코드화		
사항 상세	세부	- 시스템 간 연계 사항 등	기준 데이터는 주관기관 의	리 코드체계를 따라야 하고,
설명	내용	적용이 불가할 경우 별도	도 협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변환		자료변환			
요구	정의	성의 자료변환 범위			
사항 상세 - 모든 자료변환 대상은 전체 데이터로 한다.					
설명	내용	- 모든 사묘면완 내성은 선 	^{진세} 네이더도 안나.		

마.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학	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사항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				야 함.
상세	내용 - 다계변 시헌 반아을 수립하고 이를 무서하하여 결과 산축묵로 제시			
설명		 -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	트 실시	

요구사	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적용 및 운영				
요구	정의	운영시스템 적용 및 운영	}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가동을 위한 시 시행하여야 함.	험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요구사학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결함관리				
요구	정의	업무별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사항 상세	세부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 ^학 관리	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설명	내용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	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	을 수립하여 처리

바.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정의	행정자치부『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침 - JAVA 시큐어 코딩 가여 - 테스트 단계에서의 전원 - 보안코딩 진단 시 자동화	군가에 의한 보안코딩 진딘 · 진단도구 활용(예 : KISA제품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 는 및 보안 취약점 보완 등, fortify software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취득정보 보안준수		
	정의	사업 수행 중 취득정보 보안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가 유지보 [©] 에 대한 외부 공개 및 1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

요구사	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사항 세부 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 준수				

상세 설명	내용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요구사	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SER-004
요구사	항 명칭	운영 및 보안 요건		
	정의	운영 및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외주 용약사업 보안특약 준수(별첨 2) - GIST 정보보안기본 지침 준수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기 구축된 하드웨어, 개발환경에 대한 운영 능력 및 개발 능력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한다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투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제출한다 사업의 참여인력은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시 허가자되외 일체의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한다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없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들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상사태에 대비하여야 드웨어, 개발환경에 하여야 하며,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여 과업 수행 중은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의한 보안 각서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 완료시 허가자료 야 한다. 류 또는 각종 자료 및 목적으로 사용할 수 및 국가를 당사자로 히 숙지하였다고

사. 품질 요구사항(QA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A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정의	행정자치부『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절차,점검방법 등을 제시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지침 제50조」에 준하여 보안약점이 없도록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함 ※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활용 			

아. 시스템 요구사항(SY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교유번호 SYR-001				SYR-001
요구사	항 명칭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개발방식을 유지하여 7 - 개발환경과 실제 운영 환경을 바탕으로 구축 있도록 함	합정보시스템(ZEUS Syster 개발생산성을 극대화함 환경의 프레임워크를 동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어	l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자. 제약 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요구	정의	정의 목표시스템의 개발제약에 관한 사항			
사항		- 하드코딩 및 프로젝트 범위 내 ActiveX 사용을 지양한다.			
상세	세부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어			
- ,	내용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설명		- 주관기관 의 개발 및 [JI 표준을 준수하고 적용하	여야 한다.	

요구사	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	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의 법적제약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를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를 준수해야 한다. 한다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자치부)'를 준수해야 한다.		치부)'를 준수해야 한다. 생정자치부)'를 준수해야	

요구사	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	항 명칭	근무 제약사항					
	정의	시스템 개발 근무 형태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개발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근무시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정에 차질이 있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때, 광주과학기술원이 요구 시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근무시간 외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스템 연계를 위한 인력(1인 이상)이 사업기간동안 협의된 장소에서 직접지원 또는 원격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	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	항 명칭	대금지급방법					
<u> </u>	정의	대금지급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 용	 ○ 본 사업의 대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선금 : 100분의50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 47조 선급금지급) - 잔금 : 최종검수 완료시 지급 ○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 가치세 포함)를 의미함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역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 본 사업의 성격상 수행자료요청 등에 있어 실	업체는 주관기관 의 실무 무부서의 상황에 따라 사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추건	서 종료까지 부서와의 협의 및 전 협의일정계획 등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 용	- 일정계획은 사업수행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하여 계획대비 실적을 관리 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 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 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 어 기간을 연장 한다	출하여야 함. 겼을 때와, 설계 변경

요구사	항 분류	프로젝트관리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정의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분석) 요구사항 정의설계) 시스템 구성되 설계서	함 1부 리자/개발자) 매뉴얼 프로그램 1식	예자정의서 D, 프로그램 사양서, 화면

- 단계별 산출물 제출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착수	0 착수계0 사업수행계획서0 보안서약서0 건강보험확인서0 비상연락망	14일 이내
사업 수행 사업	0 월간업무보고	월간
사업 종료	0 보안확약서 0 관련 매뉴얼	종료 전
기타	0 표준운영관리 매뉴얼 0 장애처리매뉴얼	종료 전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관리자 교육 등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관리자와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시스템관리자 교육 : 단위 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 시스템 구축 후 운용 및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자 양성에 대한 교육계획 (교육과정, 대상자,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 에서 추기 교육요청 시 응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는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이전하여야 함. -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의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전 될 수 있어야 함. - 계약상대자(패키지 제작사가 아닐 경우)가 패키지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제작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발급받아 계약후 10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 관리		
요구	정의	유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지원	
사항	세부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 _ 한 전 시스템의 안성~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	자보수기산(하자남보 책임

상세 설명	내 용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관련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 에 제출함 - 하자보수 기간 중 단시간 장애복구 및 지속적인 데이터의 완료등 유지보수를 담당할 담당 조직구성을 확보 - 하자보수 기간 중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시스템 사용이 불가시즉시 사업수행 시 개발인력을 상주 투입하여 지원하도록 함 - 하자보수기간 중 발생한 결함을 처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형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구축 시스템에 대한 유상 유지관리 조건을 제시 상세한 장애 대응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	항 명칭	리스크 관리				
	정의	리스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발생을 사선 예방하고 발생 시 사우 내저방안을 제시		제시 경우에 대한 사후 사항의 관리방안 및 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	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정의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관기관 의 보유 시스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경제이지에 공지 - 각종 침해사고 예방 대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원 등의 보안대원 장안을 제시 - 포로그램 적용 시 오류방안을 제시(평일, 자료의 파손, 변질, 변절, 변절, 변절, 변절, 변절, 변절, 대업, 협력업체도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장애 상황을 자동으로 관리 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기자와 사용자 서비스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발생 즉시 보고하는 안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함) 구기능 운에 대한 대처방안 근영 방안을 제시 별 긴급대응 전략을 제시 방지대책을 제시		

- 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에 대하여 시스템 환경 및 업무 특성들을 고려한 백업 및 복구 전략을 제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비정기적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광주과학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 운영 기준(2018.11.14.)" 을 적용

나. 입찰 참가 자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 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단독 도는 공동수급(주계약자관리방식만 허용,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25%이상)가능
-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u>직접생산확인증명서</u>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식

- ☑ 제안서 평가는 제안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 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별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을 참고하되, 본 사업에 맞 게 재구성한 기술평가표에 따른다.
- 기술능력평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 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을 평가 점수로 한다.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 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 제안 가격부분은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 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나. 협상기준

-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제안사를 협상적격으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후보를 선정하며, 후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상위 순위업체와 협상결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협상대상 업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 순위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술성 평가기준

가. 기술성평가기준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배점	비 고
계량 평가 (10)	사업 수행 능력 (10)	보유인력 (5)	보유인력 현황	[별표 1] 저 계량평가 방법		5	
		재무구조 · 경영상태 (5)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등)	[별표 2]재무구조· 태 기준 평 참조	경영상	5	
			- 사업이해도	매우우수	S	10	
	전략 및 방법론 (10)		- 추진전략	우수	A	9.25	
			- 적용기술	보통	В	8.5	
			-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미흡	С	7.75	
			- 사업추진 방법론	매우미흡	D	7	
	기술 및 기능 (18)		- 시스템요구사항	매우우수	S	18	
			- 기능요구사항	우수	A	16.65	
			- 보안요구사항	보통	В	15.3	
			- 데이터 요구사항	미흡	С	13.95	
비계 량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제약사항	매우미흡	D	12.6	
평가				매우우수	S	9	
(80)	성능 및 품질 (9)	nl Tral	- 성능 요구사항	우수	A	8.325	
			- 품질요구사항	보통	В	7.65	
		(9)	- 인터페이스요구사항	미흡	С	6.975	
				매우미흡	D	6.3	
				매우우수	S	9	
		.로젝트관리 (9)	- 관리방법론	우수	A	8.325	
			- 일정관리	보통	В	7.65	
			- 개발환경	미흡	С	6.975	
			7,220	매우미흡	D	6.3	

		이기기기기	매우우수	S	12	
	프로젝트지원 (12)	일정관리품질보증기밀보안관리위험 및 이슈관리	우수	A	11.1	
			보통	В	10.2	
	(12)		미흡	С	9.3	
			매우미흡	D	8.4	
		- 품질보증	매우우수	S	18	
	프로젝트지원 (18) 하도급 (4)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우수	A	16.65	
			보통	В	15.3	
			미흡	С	13.95	
			매우미흡	D	12.6	
			매우우수	S	4	
			우수	A	3.7	
			보통	В	3.4	
			미흡	С	3.1	
			매우미흡	D	2.8	
합계				90		

〈평가부문 평가항목별 평가기준표〉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전략	추진전략	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및 방법	적용기술	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론 (10)	표준프레임 워크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등 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18)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가를 평가한다.				
	기능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요구사항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시큐 어코딩 수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 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한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 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古 ② (9)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 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프로 젝트 관리 (9)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젝트 지원 (12)		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있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있다.		
프로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젝트 지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8)	유지보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하도 급 (4)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계획서 정성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것		

나. 정량적(계량)평가 세부기준(10점)

※ [별표1] 참고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1) 제안서 제출공문서 및 하기서류 각 1부.
- ※ 제출자가 대표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 부 포함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 2) 입찰보증서류(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 1부
- ※ 금액은 입찰금액의 2.5/100이상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 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할 것
- 3)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원본 대조필) 사본 1부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7) 행정처분내용 1부
- 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9)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 10) 제안서 USB 1개(관리용 파일 1부, 평가용 파일 1부)
 - * 관리용 파일은 제안사 구분 가능토록 표지에 표기 제출,
 - * 평가용 파일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기를 삭제하여 제출, 이를 따르지 않을시 1건당 1점씩 감점처리 함
- 11) 기타 제안 관련 서식에 근거한 관련서류 일체
 -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해당시) 1부
 - *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양식 일체(공동수급의 경우에 한함)

나. 제안서 포함사항

1)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서식 제13호〉
- 2) 주요사업실적 (참고용)
- 3) 최근 3개년도의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재무제표 증명원 등)
 - ※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평가서류는 구분하여 제출
 - ※ 별도의 첨부 양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 형식에 의함
 - ※ 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지참
 - ※ 제안서 제출 시 "별표3-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첨부
 - 4)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5. 제안서 평가

- 가. 제안서 평가 방식 : 서면평가 진행
 - ※ 발표시간 및 장소는 제안업체 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 나. 유의사항
 - 1) 발표자료가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2) 발표자료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 할 수 없다.

6. 제안서 보상

가.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경비는 일체 보상하지 않음

Ⅵ 제안서 작성 및 준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이 제안서상 제안내용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관련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한다.
-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한다.
- 다.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라.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바.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 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사.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 제안서는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분화하는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서는 A4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본문(별첨 제외)은 150쪽 이내로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 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 주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나.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 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 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안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 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안되며,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 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주관기관의 계획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 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대체 할 수 없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일체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관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 제안서는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되, 기본적으로 제시된 제 안요청 사항의 수용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 열 람이 용이하도록 제안요청사항 조견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VII 기타사항

1. 입찰의 무효

- 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 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마.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비밀유지 의무

가. 입찰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관계 규정 및 법령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5. 계약 체결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 나.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수행계획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으며,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변경된 산출물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로 한다.

6.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 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나. 본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이 기 보유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개발 사업으로 지식재산권은 본 사업에서 새롭게 제시되거나 적용된 부분의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소유로 함

7. SW산출물 반출 절차

- 가.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외주용역사업보안특약」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1)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2)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3)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8. 원격지 개발 활성화

- 가. 작업장소 상호협의
 - 1)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2)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 런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3)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나.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보안요구 사항
 - 1)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2)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3)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가)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나)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다)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할 것
 - 라)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마) 원격지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 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함
 - 바)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 사) 장비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발주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다.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 검토 절차

1)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9. 과업심의위원회

가. (과업내용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 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 업 과업변 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별표1】

제안서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보유인력	보유인력							
	구분	30명이상	20명이상	10명이상	5명이상	5명 미만			
보유인력 보유인력	점수	5점	4.625점	4.25점	3.875점	3.5점	5		
고유인덕 -	※ 입찰공고일 현재 4대 보험 납입 인력 기준 ※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재무구조·경 영상태	"[별표2] 재두	"[별표2]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 평점표"참조							
합계							10		

【별표2】

재무구조 · 경영상태 기준 평점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	А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6
BB-	В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

※ 주)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광주과기원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3】

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 1. 평가 점수
- 총 합계 점수 : 점
- 2. 부문별 평가점수 요약

○ 보유인력

보유인력 수	평가 점수	비고
во	검	

○ 재무구조·경영상태

구분	등급	평가점수	비고
재무구조·경영상태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정보화 사업 수행 시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에 따라 보안사항 조치와 이행을 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공통사항

-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나.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다. 누출금지 정보 준수 위배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우리 원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라. '누출금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누출금지 정보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 크장비 설정 정보
-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마. 본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원의 보안정책(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와 "누출금지 정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바. 본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본원의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 한다.
- 사. 용역수행은 본원 담당자가 지정 및 허가 한 장소에서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신고)한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다.
- 아. 핵심인력 변경 시 본원 담당자에 통보하고, 승인 후 출입할 수 있다.
- 자. 출입 시 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본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카.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본원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가. 주요사항

-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의 서약내용에 대한 준수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용역 수행시 용역사업에 참여할 핵심인력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본원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핵심인력은 출입할 수 없다.
- 용역사업 핵심인력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용역사업일 경우 지정하지 않고 본원 담당자가 대행할 수 있다.
- 핵심인력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본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전 본원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은 붙임 교육 자료에 근거 숙지한 후 서명 날인 후 본원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미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착수 시 제출서류

【붙임 1-3】보안 서약서 제출, 【붙임 1-7】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제출,

다. 검수 시 제출서류

【붙임 1-4】에 근거 친필서명 보안확약서 제출

3. 기타 보안 준수사항 및 조건

- 가. 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용 PC(노트북 포함)
 - 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용 PC는 본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역업체의 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본원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후 허용할 수 있다(반출 시 본원 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할 수 있다.)
 - 개발용 PC는 USB 및 CD 봉인, 인터넷 차단상태로 제공한다.
 -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에 접근(정보운영팀 운영 공용시스템에 한함) 위해서는 정보운영팀에서 제공하는 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 ※ 우리 원의 접근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작업내용(ID, 작업시간, 실행한 명령어, 기타 접근기록)을 기록 함(관리자에 의한 관리감독 시행 중)
- 나. 통신기기 및 노트북등의 반입통제
 - 작업 장소에 노트북 및 USB, 휴대폰등 통신기기 등은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없다.
 - 반입 시에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본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자료제공 및 관리

- 제공된 자료의 임의파기를 금지하며,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관리하고, 본원 담당자의 입회 및 승인 하에 파기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 등 모든 자료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본원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 【붙임 1-4】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정관리(계정 제공 기준)

- 용역 수행을 위한 ID는 1회용 또는 임시 ID를 제공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관리대장 작성 및 담당자 확인)
- ※ Admin/root ID가 필요 한 경우 본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지원한다.

마.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09:00 ~ 18:00으로 하며, 필요시 본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사전 통보 및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허용)
- 휴가, 외출 등의 사유발생시 본원 담당자에게 통보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출입 시 준수사항

- 출입 관리대장 작성(붙임 1-5 참조,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통신기기, 전산기기 반입승인
- 백신설치 및 업데이트 확인 (인터넷이 차단된 PC는 본원 담당자가 조치 후 Update 함)

사.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기준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본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할 수 없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 ※ 단, 원격작업을 위한 보안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는다.
- 아. 용역작업 장소(사무실) 보안관리
 - 용역작업 장소(사무실)는 정보유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인터넷 과 분리 및 접속제한, 출입관리 대장 관리 등)를 하여야 한다.

【붙임 1-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 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 · 현안자료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 서류함 ·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 ·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 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 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	안	서	의	처
—	L	, ,	-	, ,

			<u>- </u>	•	
본인은년 _ 월					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가.
1. 본인은	관	련 업무 중 알	게 될 일치	웨의 니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 행 중 지득한 >		– –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 하지 아니한다.
, , , _		–		_	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 -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입 담한다.	ქ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	체로 '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직	명 : 위 :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직				(서명)

※ 사업 수행 시(계약시)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확인서명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 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완료 후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붙임 1-5】

[출입관리-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全	띱	판디	-선산상	비 반・술	입 판대	기내상]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기	 기품	부서 담당	
	'							조치내용	확인
			소속			USB등		_	
출입관리	년 월	일				키메라		-	
2009		2	성명	(인)		휴대폰		-	
				(2)		기타			
				1		악성코!	三 점검	부서 담당	당자 확인
전산장비	기기명		반·	출입 일시	백신/Update	반입시	 반출시		
반·출관리							다음시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기	I 푸	부서 담당	
	르시			067	07/77		16	조치내용	확인
			소속			USB등			
- 01-1-1		٥.				카메라			
출입관리	년 월	일	un	(01)		휴대폰			
			성명	(인)		기타			
	_					악성코	= 점검	부서 담당	 당자 확인
전산장비	기기명		- 반·	출입 일시	백신/Update	반입시	반출시		
반·출관리								_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 적	소기	니품	부서 담당	
	E-1			OE 1	31/71			조치내용	확인
			소속			USB등		-	
출입관리	년 월	일	•			카메라		_	
물집선디	다 를	2	성명	성명 (인)		휴대폰		-	
			00	(2)		기타			
						악성코	= 점검	부서 담당	 당자 확인
전산장비	기기명		반·	출입 일시	백신/Update	반입시	반출시		
반·출관리								-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기	내포	부서 담당	
	211			011	01/77		10	조치내용	확인
			소속			USB등			
3 017171	13 01	OI.	•			카메라			
출입관리	년 월	일	서메	(01)		휴대폰			
			성명	(인)		기타			
						악성코!	三 점검	부서 담당	당자 확인
전산장비	기기명		반·	· <mark>출</mark> 입 일시	백신/Update	반입시	 반출시		
반·출관리						C 6 4 1	CEM		
관리번호	일시			방문자	용무/목적	소기	니품		상자 확인
	= '				J ., , , ,			조치내용	확인
			소속			USB등		-	
출입관리	년 월	일	-			키메라			
굴립한다	긴 펼	2	서며	(01)		휴대폰		_	
			성명 (인)			기타			
				•		악성코!	= 점검	부서 담당	당자 확인
전산장비	기기명		반·	·출입 일시	백신/Update	반입시	 반 출 시		. –
반·출관리						LEM	CZM	-	
	I .		i		1	1		1	1

용역사업 자료제공 관리대장

(폐기 시 사진촬영 후 하단에 부착)

사업명	자료명	제공일시	반납일시	사용자	자료처 폐기	리방법 보존	관리자(담당)
					, ,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본인은 " 사업의 수행 핵심인력으로서 기밀보안대책 및 누출금

-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기타 온라인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 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 에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추진(계약시) 해당자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제 안 관 련 서 식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2〉 가격제안서
-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
- 〈서식 4〉 실적 증명원(참고용 자료임)
-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6〉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서식 7〉 보안확약서
- 〈서식 8〉 기밀보안대책 준수서약서
- 〈서식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서식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 주식회사

주소 전화 팩스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참 조:계약팀장

제 목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모듈 변경 사업

- 1. 광주과학기술원 공고 제 호 관련입니다.
- 2. GIST에서 추진 중인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모듈 변경 사업에 참여코 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사업제안서 수록 USB 1부.
 - 2.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 3. 가격제안서 1부. 끝.

○○○○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업체명 : 평가용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마시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え	리	기 간	
※아라	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여	네만 기재하시기 바랍니	다.			3	<u>:</u>	시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Ļ	<u> </u>	월	일
개 요	입 찰 건 명								
집 참 보 성 기미	납 부	•보 증 금 율: •보증금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합니다.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김	을 다음	음과 같 ⁰	기 신	고합니	다.
· 사용인 감	성명 생년	월 일		사용인감	(인)				
매・フ	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	낙하고						품구
붙임서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써 경			년 월 일					
<u>광주고</u>	<u> </u>	신청인			인감날인	<u>l</u>)			
	세출외 현금출납 담당 성 증권 취급담당 성	명 : 명 :		인 인					
11 10		 입 찰 참	가	 신 청 증					
입 차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인	주 소								
	대 표 자 =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	 	OI OIH	/제하·지며\격재 이차에	차가시	처으 미	 えしス	FOI으	 즈며
합니다		E(시66시)한 구의 년-	1 26	(세원 시승/영영 법물에	10/17/C	62 Y	2 ^	102	00
		광 주 고 계 약 담 !			(01)				
		게 약 담 9 <u>귀하</u>	o ^[·	000	(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극	발주기관								
제인	제안업체								
사업	ゴ기간			~		() 개월			
제인	안금액	일급	<u></u>		원	(₩)			
	구	분		금 액		비고			
						부가세 포함			
						"			
						"			
						"			
						"			
						"			
						"			
						"			
	제	안금액				"			
<u>E</u>		금액으로 가격저 !내역 및 금액/		<u>.</u>		년 월 일			
		-	Lマ つ! こ !	주관사 		(직인) =1			
		7	상주과힉	기술종	상시	<u>o</u> t			

〈서식 제3호〉주요사업실적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고						

-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 해당 주요 사업 실적은 참고용으로 활용할 예정
- ※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실적 증명원 첨부 (한국S/W산업협회 이행실적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서식 제4호〉실적증명원(참고용)

				<i>)</i>	실적 충	증명원			
5	용도 및	및 제출처							
사	사	업	명						
업	계	약 금	액	일금		원	(부가세	포함)	
내	계	약	일				수 행	기 간	
용	사	업 내	용						
	상	호	명				사업자등	등록번호	
수행 업체	주		소				전 화	번 호	
ᆸᄾᅦ	대	丑	자						
수행 내용									
추천 의견									
위	실적0	있음 <u>을</u>	증명	합니다.					
						20 .			
					기관명	(인)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 공동계약으로 이행 시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 공공기관이외의 수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년	년 개월)
주요연혁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등	동 자산			
당기	순이익			
	부문			
	부문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ス	·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입찰 공고일로부터 결산 공고된(또는 예정인) 최근 3년 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완료 후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본인은 "

기밀 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 사업의 수행 인력으로서 기밀보안대책 및 누출금지정보

의 모든 내용을 준수	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レラフョココル	마무지 이미 미기자이크 기구기원이스이 다시 사자 케이기제에 스크

-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기타 온라인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 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 에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 사업 추진(계약시) 해당자의 친필서명을 받아 사업관리대장에 첨부 보관하여야 함.

〈서식 제9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	급자				하도	.급자		
사 업 명				하 도 등 사 업 5					
회 사 명				회 사 5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 7	글 간				
				하도급 지급대급	-			원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MS 라마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ММ	기술사							
		특급기술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참	합의하	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	일	
				/OLE 3 = 1	.	_			
				(원도급자			직 ⁽		
				(하도급자)		직' 	인 	
첨부서류 : 하	도급	부문 산출 니	H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Σ 지급급액 ÷ Σ (SW 월노임단가 \times 투입인력)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발시 제	10호서식] <신설 200		 도급 ,,				처리	기간
	소프트웨어/	사업 □재호	계인	냐숭인신청	引서			4일
۵. –	상 호	<u> </u>		대 표 >	 7].		,	T E
원도 급자	-							
	사업자등록			소재기				
하도	상 호			대표 >				
급자	사업자등록			소 재 기	지			
재하도	상 호			대표 >	자			
급자	사업자등록			소 재 기	지			
사업	계 약 명		계약번호			계약금의	4	
내용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4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명			하도급	액			
하도급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일	~ 년	월	일
내용	하도급 내역		/. ছা (^) 121-31)1	٠ ٨ ١			
	및 사유		(* 包ェ	요시 별지 시	[공]			
	계 약 명			재하도급	급 액			
재하도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급내용	재하도급 내역		/ ₊ ∇ (े यो मद्देनो यो	۱ ٥ ١			
	및 사유		(* 덛고	오시 별지 시	Ի Ծ)			
「소프	프트웨어산업 진공	 흥법」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저	 세8조지	 세1항에 ¤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대								
	도급(또는 재하도 도급(또는 재하도	,		, , ,	∇	<i>≒</i> L\		
Z. OF	포ㅂ(포는 세이크	5日/ 사람무행세	,럭시(세구 사	百十七里谷	파파	월)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 1. 계약건명 :
- 2. 계약금액 :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1. 명 청 : ㅇㅇㅇ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000: %
- 2. 000: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라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ooo(인) ooo(인)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 다.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 표: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해야 함

본인은 OOOO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가. 수집 이용 제공 목적
 - OOOOO 입찰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사업명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모듈 변경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 기간 산정표	① 사업 규모: (114FP) ② 생산성: 19 ③ 1인 총투입 기간: ①(114FP) / ②(19) = 3개월 ④ 투입인력: 2명 ⑤ 개발 기간 = ③ / ④ = 3개월 ⑥ 전체 사업기간 = 3개월	3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 청서,제안요청서)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 사업계획 : 부석석계(0.5M)/구현(2M)/적용(0.5M)						
③ 유사사업자료	구사사업자료 <u>조달청 (www.g2b.go.kr)</u> 검토						
④ 기타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3개월					
	중합 의견						
⑤ 종합의견	상기 항목을 종합하였을 때,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은 0개월로 산정함(사업준비 및 안정화 기간 포함)	적정 사업기간 3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합니다.	개발사업					
	위원장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붙임 4]

	소	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사업명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	:템(RCMS) 연계모·	들 변경 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그 외 필요시□ 재평가						
	주요 내용	RCMS 연계.	RCMS 연계모듈 변경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① 상용 소크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1. 기본정보		② 국가안보 사업	!,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③ 민간투자	형 소프트웨어 사업						
	구분	④ 단일기관 소프트웨	· 내부(소속기관 제외) 경 《에 사업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③ 데이터베	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	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업					
	①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구분		예상 사용자수				
소 도당계석	사용자	■ 내부 직원				9889			
	(복수선택 가능)	□ 타 기관 직원				5			
		□ 일반 국	일반 국민 또는 기업			á			
3. 민간 소프트	24	2기능과 동일·유	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 있음	서 판매를 위해 제공 없음	당하는지 여부				
웨어 시장침해	※「없음」에 해당	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	성 불필요					
가능성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4.사업의필요성 ·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가능)			-						
	■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 침	해 가능성 없음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 (추진 밤안		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4 사업 추진)					
			기관명 : 광주	과학기술원	部	9월 24일 기괴 중엔			





연구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관리 가이드라인

□ 배경 및 목적

- o (배경) 최근 유지 및 하자보수(이하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의 연구용 시스템을 악용한 피해사례가 발생
- o (현황) 연구·개발 용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은 보안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보안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 ◆ R&D를 임무로 하는 기관 특성상 인력 대비 서버 수량이 많고, 보안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연구실에 서버가 분산·설치
 - ◈ 전문 솔루션 사용 등으로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용역직원 등 정상적인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연구용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가능
 - ◈ 연구용 시스템 관리자인 연구자는 정보보안에 대한 비전문가이고 정보보 안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연구용 시스템 보안관리 미흡
- (목적) 연구·개발 용도로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u>유지보수 용역업체</u>
 사전 확인사항, 계정관리, 작업관리 등에 관한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가이드라인 내용

---- 〈연구자 용역관리 보안 수칙〉----

- ◈ 【용역업체 사전확인】 대표이사 보안확약서 및 유지(하자)보수 용역 보안 서약서 징구
- ◈ 【용역직원 계정관리】 관리자 계정(수퍼유저) 부여금지, 별도 임시계정 부여· 주기적 관리
- ◆ 【용역직원 작업관리】 작업 前(사전보고)·後(결과보고), 시스템 작업로그 최소 1년 보관





1. 용역업체 사전확인

 (보안서류 수령) 연구책임자는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후, 용역업 체로부터 참여인원 명단, 대표이사 보안확약서 및 참여인원 보안서약 서를 제출받고, 용역 보안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함

【계약 후】		【보안서류】		【보안교육】
참여인원 명단 수령	\Rightarrow	대표이사 보안확약서 및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수령	\Rightarrow	용역업체는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 (교육내용)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자료누출금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사항 등
- (보안서류 보관) 연구책임자는 유지보수 참여인원 명단, 참여인원 보안서
 약서 및 대표이사 보안확약서를 3년 이상 보관, 정보보안부서에도 공유

2. 용역직원 계정관리

- o (기본 원칙)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root) 계정 부여 원칙적으로 금지
 - 관리자 권한 계정은 운영체제 파라미터값 설정 및 시스템 로그파일 삭제 등 절대적 권한이 설정되므로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분기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리자 권한(root) 계정에 대한 용역업체 단독적인 접근 불허
 - ※ 반드시 연구용 시스템 관리자 참관 또는 입회 하에 용역업체 작업 수행
 -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과 분리된 별도의 그룹 및 계정*을 부여하고, 용역직원 변경·퇴직·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신속히 용역직원에 할당된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 회수
 - ※ 부서별 계정관리대장 또는 비밀번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o (원격 유지보수) 원칙적으로 금지, 부서장(또는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적절한 보안조치* 적용 후 한시적**으로 허용 가능

- * (원격 접속시) VPN·방화벽 등 접근통제 필수, 관리자 권한 계정 부여 불허
- ** 1년 단위 또는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불허

① 시스템 접속·작업계정 부여시

- (부여대상)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등 보안절차 확인이 완료된 유지보수
 수 용역 참여인원 중 최소 인원에 한하여 계정을 부여함
 -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과 분리된 별도의 그룹 및 계정을 생성하고 계정관리 대장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접속계정) 연구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만 단계적으로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계정종류	접근 권한	용역 계정	비고
사용자(user) 계정	기본 접속, 시스템 오류 확인 및 점검	부여(○)	guest 등 별도 생성한 계정
	Web/WAS/DB 등 설치·제어 권한	부여(○)	제조사 계정
시스템 계정	시스템 데몬 수행, 로그 확인	부여금지(X)	system 등
다.	시스템 파라미터값 수정, 자원 할당,	브여그지(X)	root(최상위 계정)
관리자(root) 계정	시스템 파라미터값 수정, 자원 할당, 긴급 장애복구, 로그·파일 삭제 등	부여금지(X)	root(최상위 계정 administrator 등

- 관리자 권한(root) 계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시스템 관리자인 부서장(또는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적절한 보안조치 후 한시적으로 계 정 부여





【관리적 보안조치】

용역업체에 계정 필요 사유서 제출 요구

→ 정보보안부서에 통보하여 사유 적정성 확인·승인 후 계정 부여

【기술적 보안조치】

용역직원 작업이력(로그파일)을 로그관리 서버*로 전송·보관

* 별도의 로컬저장매체 등 로그파일을 저장보관 할 수 있는 다른 저장매체도 가능

- o (권한설정) 연구용 시스템 관리자(또는 연구책임자)는 용역직원이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최소 권한만 설정·부여
- o (허용기간) 연구용 시스템 관리자(또는 연구책임자)는 유지보수 용역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고,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스템 접근 금지 등 불허
 - * 1년 단위 또는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불허

② 용역직원 작업 수행시

- o (작업관리) 연구용 시스템 관리자(또는 연구책임자)는 용역직원의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모든 작업과정을 참관(입회) 또는 감시
 - 접속·작업이력(로그파일) 수정·삭제 등 시스템 로그 위·변조 감시
 - 업무목적 외 불법사용 금지
- o (권한상승) 사용자 권한 계정의 용역업체 직원이 불가피하게 관리자 권한(root)이 필요한 경우 입회 중인 내부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시스템을 조작*하여 권한을 상승 후 회수
 - * 예시 : 리눅스 서버에서 "sudo" 또는 "su" 명령어 사용
- o (로그관리) 연구용 시스템 관리자(또는 연구책임자)는 유지보수 용역직 원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작업·정책변경 등 사용이력(로그파일)을 최 소 1년 이상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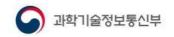




③ 용역직원 작업 종료시

- (계정회수) 연구용 시스템 관리자는 유지보수 용역직원의 작업종료
 또는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히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 한 회수*
 - * 정상적인 작업종료시 계정 비활성화, 직원 변경·퇴사시 감사추적성 확보를 위해 1년간 비활성화 후 삭제조치
- o (계정관리) 연구용 시스템 관리자(또는 연구책임자)는 유지보수 용역업 체 직원에 부여된 계정 및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 ※ 비밀번호 등 계정관리 대장에 기록・관리, 또는 계정・비밀번호 관리시스템 적용 관리
 - 사용자 권한(user) 계정 및 비밀번호는 관계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경·사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비밀번호 관리)
 - 관리자 권한(root) 계정 및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사용
 - ※ 부서별 정보시스템 계정관리 대장 및 부서별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철저, 필요시 계정·비밀번호 관리시스템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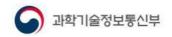
시스템	비밀번호 변경
리눅스 계열	passwd 계정명
윈도우	## ## ## ## ## ## ## ## ## ## ## ## ##
	암호 변경 취소





3. 용역직원 작업관리

- o (용역 직원관리) 연구책임자는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사전에 제출한 참여인원 명단의 직원인지 확인 후 사전에 승인된 참여인원에 한하여 출입·작업 허용
 - 유지보수 용역업체 참여인력의 사업기간 중 임의교체 금지
 - 교체직원이 있거나 참여인원 명단 이외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차단한 후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시정 요구조치
 - ※ 연구책임자는 유지보수 참여인원이 교체된 경우, 교체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수령 및 보안교육 등 사전 보안절차 수행 완료 확인 후 용역 작업에 투입 허용
- (작업계획 확인) 연구책임자는 용역직원의 작업시작 전에 작업계 획서를 제출받고 수행할 작업내용을 확인
- (작업결과 확인) 연구책임자는 용역직원의 작업종료 시 작업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작업계획서대로 수행 여부 등 작업결과 확인
- o (작업이력) 연구책임자는 접근권한 부여·삭제 등에 관한 내역, 작업계 획서, 작업결과보고서는 3년 이상 보관, 정보보안부서에도 제출
 - 정보보안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보안 위규사항 여부 등을 판단하고 보안 위규사항은 연구부서에 시정 요구





4. 부서별 역할

부서별 역할		주요 내용		
정보보안부서	자체 내규 정비	- 연구용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하도록 자체 내규 정비		
	보안교육 시행	- 연구부서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계정관리 방법 등 보안교육을 연 2회 이상 시행		
	보안취약점 점검	- 연구용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관리·감독	-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 4종 관리대장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취약한 사항에 대한 보안조 등 관리·감독		
연구부서	보안성검토 수행	- 연구용 시스템 구축시,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성검토 수행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 기 록관 리	- 4종의 관리대장(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반출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계정관리대장, 정보시스템 비 번호 관리대장) 기록·관리		
	용역업체 관리	-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사전 확인사항, 계정 관리, 작업관리 등 보안관리 철저		
	작업이력 및 로그관리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 시스템 접근·작업 등 사용이력 (로그파일) 1년 이상 보관, 정보보안부서에도 공유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삭제 등에 대한 내역,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는 3년 이상 보관, 정보보안부서에도 제출 		